

제338회 임시회
2015. 3. 13.(금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2015. 3. 13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월 19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3월 5일

-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장희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‘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의 구성·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인용조항 변경(안 제1조)
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 →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
-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(안 제3조)
 - ‘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가 대행하던 ‘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의 기능을 ‘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가 대행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맹정호)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(‘14.5.28)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,
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에 대행하던 ‘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에서 ‘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로 변경하며,
-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신설된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2의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임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사안이며,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관리·운영 원칙에도 부합 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단, ‘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’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기능으로 하는 바, 기능 측면에서 볼 때,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수립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

는 기존 ‘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데, 이를 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에서 대행토록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함.

- 또한,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2의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장관의 수정공시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회 공지 대상이지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, 이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수정안 요지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5. 3. 5. 박종규 의원
- 수정이유
 - 위원회 심사대상 부적합 내용 삭제
- 주요 수정내용
 - 안 제3조제2항을 “위원회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” 로 수정하고,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함.(안 제3조제2항)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-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114호
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수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2의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장관의 수정공시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회 공지 대상이지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.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2항을 “위원회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” 로 수정하고,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함.(안 제3조제2항)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전부를

“위원회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
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” 로 수정하고,
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과 기능) ① (생략)</p> <p><u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p>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2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2의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</p>	<p>제3조(구성과 기능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② 위원회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p>1. (삭제)</p> <p>2. (삭제)</p>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” 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 를 “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한다.

② 위원회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2. (삭 제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</u>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구성과 기능) ①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<u>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</u>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<u>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구성과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<u>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</u> -----.</p> <p>② 위원회는 <u>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p>1. (삭 제)</p> <p>2. (삭 제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수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)
2. 재무제표
3. 채권관리 현황
4. 기금운용 현황
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6. 지역통합재정통계
7.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8. 중기지방재정계획
9.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10.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11.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12.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
13.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14.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15.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
 - 가. 교부현황
 - 나. 성과평가 결과
 - 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
 - 라.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
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

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는 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”로 본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0조의2(통합공시)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,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.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